

「경상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1.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개정시행('26.1.1)에 따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 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9조)

- 다. 회계감사인 평가 및 선정,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1조)
- 라. 회계감사인 평가기준(별표)

3. 제정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 부서: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예산담당관

전화: 054-880-2177 Fax 054-880-2189, 이메일: sukida@korea.kr

경상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경상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예산, 회계, 감사, 재무·경영,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선정방법)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지방공기업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한다. 다만,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선임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선임 사실을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11조(계약체결) 제9조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10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A	B	C	D	E	
[정량] 감사 수행 역량 (40)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5	15년 이상 (5)	10년 이상 (4)	5년 이상 (3)	3년 이상 (2)	3년 미만 (1)	
	② 징계현황 -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	5	0건 이하 (5)	3건 미만 (4)	6건 미만 (3)	10건 미만 (2)	10건 이상 (1)	
	③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제출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공인회계사 제외)	10	20명 이상 (10)	15명 이상 (8)	10명 이상 (6)	5명 이상 (4)	5명 미만 (2)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	20	10건 이상 (20)	8건 이상 (18)	6건 이상 (16)	4건 이상 (14)	4건 미만 (12)	
[정성] 감사 수행 계획 (60)	⑤ 소요예산 및 제안금액 평가 - 예산적정성 상대평가 - 감사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대비 가격 합리성	10	매우 적절 (10)	적절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⑥ 사후서비스 제공 - 회계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및 재무적 위험요소 개선 권고 등	10	매우 적절 (10)	적절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⑦ 감사전략의 적합성 - 공공기관 특성 이해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숙달 정도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⑧ 감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감사 수행인력 구성원 수,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에 전문성 등	25	매우 적절 (25)	적절 (20)	보통 (18)	미흡 (12)	매우 미흡 (10)	
합 계		100						

2. 평가방법

가. 정량평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단, 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다. 동점 발생 시 배점이 정성평가의 합계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다만, 정성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의결로 결정한다.

자치규제 영향분석서

1-1. 규제사무명	경상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제4조4항 및 제6조)																						
1-2. 규제유형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강화 <input type="checkbox"/> 존속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1-3.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table border="1"> <tr> <td>자치단체명</td> <td>경상북도</td> <td rowspan="5">작성 자</td> <td>이름</td> <td>장숙희</td> </tr> <tr> <td>담당부서</td> <td>예산담당관</td> <td>직급</td> <td>지방행정주사</td> </tr> <tr> <td>국장</td> <td>기획조정실장</td> <td>연락처</td> <td>054-880-2177</td> </tr> <tr> <td>과장</td> <td>예산담당관</td> <td>이메일</td> <td>sukida@korea.kr</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자치단체명	경상북도	작성 자	이름	장숙희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직급	지방행정주사	국장	기획조정실장	연락처	054-880-2177	과장	예산담당관	이메일	sukida@korea.kr				
자치단체명	경상북도	작성 자	이름	장숙희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직급	지방행정주사																			
국장	기획조정실장		연락처	054-880-2177																			
과장	예산담당관		이메일	sukida@korea.kr																			
1-4. 규제조문 (근거법규 및 분류)	<p>제4조(위원회의 구성)</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회계, 감사, 재무·경영,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p>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p><input type="checkbox"/> 개별법 위임규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 규제 <input type="checkbox"/> 기타(특별법·특례 등)</p>																						
1-5. 규제의 내용	기준	규칙 제정에 따른 기준 조항 없음																					
	변경	해당없음																					
1-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해당사항 없음																					
	이해당사자	지방공기업 및 일반 도민																					
1-7. 비용대비 편익 또는 효과 요약	해당없음																						
1-8. 일몰설정 여부	일몰설정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존속기한 미설정 <input type="checkbox"/> 존속기한 설정																					
	존속기한·사유	지방공기업법 제36조의2의 신설조항에 대해 경상북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으로 존속기한 미설정은 불가피한 조치																					

2-1. 자치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필요성

(1)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2. 자치규제의 목표·기대효과

(1) 선임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 선임대상자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위원회 운영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포함함

2-3.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1) 지방공기업의 예산과 결산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요구하므로,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구성을 통해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실무경력이나 전문자격등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며, 해당 안건 심의 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의 장치도 필요함

2-4. 자치규제의 지역경제로의 영향·파급효과 (※ 하기 각 내용 중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1) 경쟁제한 요소에 대한 검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로 인해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사업자의 경쟁유인을 감소(협약가입 의무, 사업정보 공개 요구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를 제한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해당사항 없음	

(2) 기업활동으로의 영향 검토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해당사항 없음	

(3) 우선허용·사후규제 관련 사항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 2에 제시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거나 또는 향후 이러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해당사항 없음	

2-5. 비용·편익(또는 효과) 분석·비교

- (1) 피규제자 및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타 이해당사자 : 해당사항 없음
- (2) 피규제자 및 이해당사자로의 영향 : 해당사항 없음
- (3) 이해당사자별 비용(규제집행·감시비용 및 규제순응비용) : 해당사항 없음
- (4) 이해당사자별 편익 또는 효과 : 해당사항 없음
- (5) 비용과 편익(또는 효과)의 비교 : 해당사항 없음

2-6. 정책적 고려사항

(1) 자치규제 정비계획

자치규제의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피규제자 등 이해당사자 또는 주민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규제정비 추진사항 또는 계획은 고려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해당사항 없음	

(2) 현재 기술수준 및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피규제자가 기술적 또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해당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해당사항 없음	

(3) 이해당사자 협의·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자치법규 제·개정 전 피규제자 및 규제수혜자, 이해당사자의 협의, 의견수렴 또는 공론화 절차를 수행하였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해당사항 없음	

피규제자 또는 규제수혜자, 기타 이해당사자가 신설·강화하는 규제에 대해 자치법규 제·개정 전 반대하거나 실익이 없다거나 또는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해당사항 없음	

자치법규 제·개정 전 자치법규 제·개정 전 피규제자 또는 규제수혜자, 기타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반영되었나? ※ 반대 또는 우려되는 의견이 없는 경우 “예”로 표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해당사항 없음	

(4) 유사사례 검토결과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해당사항 없음	

(5) 자치규제 신설·강화시 행정적 영향요인 및 예상 애로사항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로 인해 피규제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행정 절차 등을 간소화할 여지는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해당사항 없음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소속된 자치단체의 집행·감시에 있어서 인력·예산 등 애로사항 또는 문제점이 예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대안의 대체가능성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가 상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자치규제의 경우, 상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해당사항 없음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예: 자율규제, 강제조항보다 과태료·벌칙금 등 경제적 유인방식 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해당사항 없음	
신설·강화되는 자치규제에 대해 해당 규제대안의 존속기한, 재검토 기한과 그 사유는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체크 사유	해당사항 없음	

3-1. 분석결과 요약

구분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규제당국 (지자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가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여 제안서 및 선임대상자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위원회 운영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타당함
피규제자	
규제수혜자 등 이해당사자	회계감사인 선정 방식 개선을 통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3-2. 기타 의견 : 해당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시행(26.1.1)에 따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3-3. 별첨 : 해당없음

관련법규발취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계감사 보고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공사”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제10조”는 “제66조제2항”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20868호, 2025. 4. 1.>

제2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제35조의2 및 제66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